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31호)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29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개요	1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신정훈의원안】	
1. 제안 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치안산업진흥법안 : 윤재옥의원안】	
1. 제안 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II . 검토의견	6
1. 제정안의 취지 및 검토	6
1) 제정안의 취지	6
2) 제정안에 대한 검토	9
2. 제정안의 구성	11
3. 조문별 검토	14
1) 목적 및 정의 등	14
2)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18
3) 전문인력의 양성	22
4) 치안장비등의 표준화 및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	24
5) 신기술·품목의 인증 및 사후관리 등	28
6)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32
7) 치안사업자 신고 및 치안산업 정보 관리, 보고 등	35
8) 협회 설립 등	40
9) 권한의 위탁 등	43

I. 개요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신정훈의원안】

1.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신정훈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2.
3. 회부연월일 : 2024. 12.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위험사회로 진입할수록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는 날로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음. 이에 반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치안서비스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체계적인 법이 부재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품목 등의 치안 관련 상품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권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함.

이에 치안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치안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장비의 첨단화 및 표준화, 통계의 작성 및 활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이 법은 치안산업의 기반조성 및 치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안산업의 진흥과 국민 생활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3)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 4)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 5)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10조).
- 6)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장비를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장비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장비로서 치안·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신기술품목으로 인증할 수 있음(안 제11조).

7)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관련 시장 동향, 치안사업자 현황,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등 국내외 치안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하며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8)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5조).

【치안산업진흥법안 : 윤재옥의원안】

1.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23.
3. 회부연월일 : 2024. 12.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 치안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피싱(Phishing),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등 새로운 치안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 중심의 범죄예방 및 대응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치안 유지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치안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첨단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이 법은 치안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3)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
- 4)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함(안 제8조).
- 5) 경찰청장은 우수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 6)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활용 및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7) 치안사업자는 치안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치안산업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II.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및 검토

1) 제정안의 취지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우리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꿀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들을 치안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경찰 미래비전위원회¹⁾는 「경찰 미래비전 2050」²⁾에서 미래 첨단기술로 인공지능 복합 CCTV, 순찰 로봇, UAM 단속 순찰, 근력증강 순찰 근무복, 실시간 범죄 현황 분석,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 등을 제시함.

「경찰 미래비전 2050」에서 제시한 미래상(뉴노멀 치안)



※ 자료: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경찰 미래비전 2050」 51면, 2022

- 1) 경찰 미래비전위원회는 경찰청이 미래 치안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2월 발족한 위원회로 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됨.
- 2) 「경찰 미래비전 2050」은 경찰 미래비전위원회가 2022년 9월 29일 발표한 미래 치안전략 종합계획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³⁾. 치안 관련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은 2018년 2,212억원에서 2022년 8,111억원으로 증가했음⁴⁾.

정부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는 해당 기술이 반영된 장비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인공지능 CCTV 등 치안 장비는 개인정보와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므로 민간이 선도적으로 산업을 개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치안장비의 표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치안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활용에 경쟁력이 있는 벤처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해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 7. (생략)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경찰청, “제2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024~2028)” 8면·9면

2022년 치안 관련 연구개발 예산 8,111억원은 경찰청 591.3억원(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50.4억원(36.3%), 국토교통부 1,344.6억원(16.6%), 산업통상자원부 900.1억원(11.1%), 중소벤처기업부 255.2억원(3.1%), 행정안전부 507.7억원(6.3%), 기타 1,568.3억원(19.3%)으로 구성됨.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첨단기술의 발달 등 치안환경의 변화 속에서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술·장비 등을 보유한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제정안은 정부의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치안장비의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 인증,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취지임.

통계청은 2024년 12월 26일 치안산업 특수분류를 고시했는데⁵⁾, 이에 따르면 치안산업에는 치안 관련 ① 제품 제조업(무기류, 운송장비, 검색·관찰·전기통신장비, 감정·감식장비, 의복 등), ② 제품 도소매업, ③ 건축·시설 설계 및 공사업, ④ 서비스업(정보시스템 개발·통합관리, 경비·경호·탐정 등), ⑤ 기관 및 단체가 있음.

경찰청이 2023년 치안산업 규모에 대한 시범조사 결과 전체 사업체수는 14,189개사이고, 업종별로는 치안 관련 서비스업 6,016개사(42.4%), 건축·시설 설계 및 공사업 3,248개사(22.9%)가 있음. 치안산업의 매출액은 총 37조 7,473억원 규모이고 업종별로는 치안 서비스업이 23조 3,368억원(61.8%), 치안 관련 제품 제조업이 9조 794억원(24.1%)을 차지함. 치안산업 종사자수는 65만 9,356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치안 관련 기관 및 단체가 29만 5,563명(44.8%), 치안 관련 서비스업이 29만 495명으로 조사됨.

5) 통계청 2024. 12. 26. 보도자료, “통계청, ‘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신산업 구조변화 탄력적 대응”

2) 제정안에 대한 검토

최근 범죄가 지능화·복잡화되고 있고⁶⁾, 이에 대응해 미국, 영국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치안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치안과학기술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음⁷⁾.

참고로 국가별 과학치안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과학치안기술을 활용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했고, 영국은 전담개발부서 운영 및 범죄예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영상 감시망을 통해 범죄추적·감시를 실시하고 있고, 캐나다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알고리즘 치안을 활용하고 있음⁸⁾.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치안장비의 표준 제정,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신기술 인증 등 치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치안산업을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6) 최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가 발생함.

7) 김연수, 이승주, 김가은, “치안산업 진흥법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연구” 54면·55면, 한국행정학회보 제69호(2017)

동 자료에 따르면 특히, 미국은 국제경찰장협회(IACP) 주관으로 개최되는 연례회의 및 박람회에서 구매자(각급 경찰기관)와 판매자의 대면기회를 제공하여 치안분야의 제품, 서비스 신기술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주요 전시분야는 정보통신, 경찰차량, 무기, 보호장비, 개인장구, 유니폼, 과학수사 등이 있고, 2017년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단계로 확대되고 있음.

8) 경찰청, “제2차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2024~2028)” 10면

생산, 개발 등이라고 넓게 규정함으로써⁹⁾, 이미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소방산업¹⁰⁾, 방위산업¹¹⁾ 등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치안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9) 참고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진흥의 대상인 소방산업, 방위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다. 「소방시설공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판매하는 업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시공하는 업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판매하는 업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라.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물자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제정안의 구성

신정훈의원안은 총 4장, 본칙 28개,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윤재옥 의원안은 장 구분 없이 본칙 19개,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됨.

두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제6조), 치안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7조), 치안장비등의 표준화(안 제8조),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안 제9조), 치안 사업자의 신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활용촉진,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치안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치안산업 통계조사, 치안산업진흥협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산업진흥법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규정¹²⁾ 체계를 따른 것으로 현행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유사한 체계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두 제정안의 차이점으로 신정훈의원안에는 신기술품목의 인증제도 및 인증신기술에 대한 지원 내용(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정훈의원안 제9조는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윤재옥의원안 제9조는 우수 치안장비 보급 확대

12) 「법제기준과 실제(2024년 개정증보판)」(국회사무처) 961면~963면 [산업진흥법 구성체계]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진흥위원회,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표준화의 추진, 창업 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전문기관 또는 지원센터의 지정, 진흥시설의 지정, 재정지원,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특례, 인증·지정제도, 영업질서 확립, 진흥원 또는 협회 등의 설립, 청문 등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신정훈의원안은 치안산업 진흥 정책 추진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 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25조)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신정훈의원안과 윤재옥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치안산업진흥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윤재옥의원안은 치안산업진흥협회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 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신정훈의원안에서는 치안산업진흥협회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제정안의 구성

신정훈의원안 (총 4장 23조 및 부칙)	윤재옥의원안 (총 19조 및 부칙)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의 책무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의 책무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장 치안산업의 기반조성 등 ○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 제8조 치안장비등의 표준화 ○ 제9조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	○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8조 치안장비등의 표준화 ○ 제9조 우수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

○ 제10조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 품목 확인 ○ 제11조 신기술품목의 인증 ○ 제12조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제13조 인증표시 ○ 제14조 인증의 사후관리 ○ 제15조 인증의 취소 ○ 제16조 인증 신기술 및 인증신품목에 대한 지원 ○ 제17조 치안사업자의 신고 ○ 제18조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제19조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활용 촉진 ○ 제20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 제21조 치안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 제22조 치안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 제23조 협회 ○ 제24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 제25조 국가경찰위원회 보고	○ 제10조 치안사업자의 신고 ○ 제11조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제12조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활용 촉진 ○ 제13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 제14조 치안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 제15조 치안산업 관련 통계조사 ○ 제16조 협회 ○ 제17조 지도·감독
제4장 보칙 ○ 제26조 보고 등 ○ 제27조 권한의 위탁 ○ 제28조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제19조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 칙 ○ 시행일	부 칙 ○ 시행일

3.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 등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안산업의 기반 조성 및 치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함께 <u>국민의 기본권 보장</u>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안산업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안산업”이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 치안 관련 상품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안사업자”란 치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치안기술”이란 치안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기술 등 치안산업 관련 기술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안”이란 <u>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u> 2. “치안산업”이란 치안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개발, 설계, 유통, 연구개발,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치안사업자”란 치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치안기술”이란 치안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품질 및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4. “치안장비”란 치안 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성능 향상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5. “치안장비”란 치안 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두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제1조(목적)에서 치안산업의 기반 조성 및 치안산업의 진흥 또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제정안의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정안의 다른 법률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신정훈의원안 제1조에서는 제정안의 목적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신정훈의원안 제25조에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두 제정안은 제2조 정의 규정에 “치안산업”, “치안기술”, “치안장비”를 규정하고 있음. 차이점으로 신정훈의원안은 “치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반면에, 윤재옥의원안은 “치안”의 개념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¹³⁾ 상의 경찰의 임무 중 가장 포괄적인 두 항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치안산업의 개념과 범주가 모호하고 포괄적일 경우 규율대상과 지원범위가 불명확해지고 소방산업 및 방위산업 등 유사 산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져 규제나 지원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유사법안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¹⁴⁾에 규정된 소방산업의 정의 규정을 참고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1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업(業)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 다. 「소방시설공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판매하는 업
 -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시공하는 업
 -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판매하는 업

한편 경찰 주요 장비 중 차량에 장착되는 치안기능 외에 차량 자체는 일반적인 산업 부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헬기, 총기류 등은 국방부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경찰청이 주관하는 치안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정안 제3조는 국가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제정안은 제5조 이하의 규정에서 경찰청장을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청 외의 다른 국가기관들이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에 협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4조는 치안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지원 등 치안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6.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치안산업의 국내·외 동향,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연구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7.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치안기술의 연구개발과 치안장비의 개발·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치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안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치안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5조 및 제6조는 경찰청장이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두 제정안에 공통적인 기본계획의 포함 항목은 치안산업 진흥정책 방향·목표, 전문인력 양성, 시설투자, 제도 개선, 재원확보·배분, 연구개발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이고, 신정훈의원안에 포함된 항목은 창업지원 등 치안사업자 육성(제5호)이고, 윤재옥의원안에 포함된 항목 치안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제2호)임.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 항목 비교]

구분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공통 항목	1.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1.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연구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 치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치안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차이가 있는 항목	5.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지원 등 치안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2. 치안산업의 국내·외 동향,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치안기술의 연구개발과 치안장비의 개발·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치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치안산업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재정운용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¹⁵⁾ 및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¹⁶⁾에 따라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안(2024년~2028년)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제정안이 입법될 경우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과 치안산업 기본계획 내용의 일관성을 위해 작성 시기를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은 치안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변경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6)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은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4.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치안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6.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윤재옥의원안이 규정한 바와 같이 시행계획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의 도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전문인력의 양성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의 교육기관을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문인력 양성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u>할 수 있다. ④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치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치안산업 관련 <u>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설립·지원</u> 3. 치안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운영 4. 치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예산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의 범위 내에서 <u>전문인력 양성</u> <u>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u> <u>일부를 지원</u>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치안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 3. 제1항제4호에 따른 치안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을 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실 시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7조는 연구소·대학 그 밖의 교육기관을 치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치안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을 유인하고 양성하기 위
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지원하고 업무에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치안산업 전문인력'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어 치안산업에 관련된 필요 전문인력과 그 양성기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전문인력의 개념
을 좀 더 명확히 정의하고 전문분야별 범위를 구체화하되, 세부적인 자
격요건이나 지원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치안장비등의 표준화 및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제8조(치안장비등의 표준화) ①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이하 “치안장비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치안장비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보급 2. 치안장비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치안장비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u>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치안장비의 보급 확대) ① 경찰청장은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치안장비등의 표준화) ①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이하 “치안장비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치안장비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치안장비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치안장비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u>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대하여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 ① 경찰청장은 우수한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8조는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치안장비와 기술은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기술표준 및 인증 등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표준화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 위탁수행 전문기관에 대해 경비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생각됨.

전문기관에 의해 표준화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찰의 수요 기준과 업계의 공급을 전문기관이 매개함으로써 경찰관들이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장비와 시스템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국민안전 증진과 치안산업계의 안정적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표준화 방식에 있어서 두 법안 모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위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행이라는 개념이 있음. 법제 기준에 따르면 업무의 대행, 권한의 위탁은 정의와 책임, 법적 효과의 귀속 등에서 서로 다른 효력을 가지므로 권한·직무의 성격, 입법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¹⁷⁾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 등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민간의 인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경우라면,

17) 행정권한의 위탁은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겨 수입·수탁기관의 정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달리 행정업무의 대행은 법률상의 권한을 행정기관의 정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의 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에 행하게 하는 것임.

위탁보다는 대행의 방식을 선택하여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명의로 책임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¹⁸⁾

참고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의 경우, 당초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는 표준화 업무를 정부기관의 책임성 및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8년 ‘대행’으로 개정한 바 있음¹⁹⁾.

18)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국회법제실, 2024), P.726~741.」

1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소방산업의 표준화)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소방장비·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의 제정·개정과 보급 또는 그 표준의 폐지
2. 제1항에 따른 제정·개정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대행업무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0120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는 소방청의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하게 한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안 제9조 및 제14조의2), … (이하 생략)

신·구조문대비표

제9조(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① (생략)	제9조(소방산업-----) ① (생략)
1. ~ 3. (생략)	1. ~ 3. (생략)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대행업무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 -----.

또한, 경찰청은 표준화 과정에서 전문기관 및 업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식 통일 위주의 행정편의적인 표준화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첨단 ICT 기술 활용 등의 분야에서는 보다 많은 유연성이 필요할 것임.

제정안 제9조는 경찰청장이 치안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치안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치안장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 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5) 신기술·품목의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신정훈의원안

제10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 품목 확인) ①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 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 적용 품목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 적용 품목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확인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신기술품목의 인증) ① 경찰청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장비를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장비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장비로서 치안·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신기술품목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품목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품목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 품목의 확인 또는 제11조에 따른 신기술품목 인증 및

신정훈의원안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표시)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품목 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품목(이하 “인증신품목”이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 신기술 또는 인증신품목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인증 신기술 또는 인증신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경찰청장은 인증 신기술 또는 인증신품목이 신기술 또는 신기술품목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증의 취소) ① 경찰청장은 인증 신기술 또는 인증신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인증 신기술 및 인증신품목에 대한 지원) 정부는 제10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1조에 따른 신기술품목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인증신품목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정훈의원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신기술 및 신기술 적용 품목의 인증²⁰⁾,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인증취소 및 인증 신기술 및 인증신품목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인증제도 도입은 치안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증받은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치안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신기술 인증제도(NET)²¹⁾나

20) 인증(認證)이란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기준이나 규격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증명하는 제도로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의 성능, 기술의 우수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품질보증과 기술개발 촉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2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확인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인증표시)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융합 촉진법」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²²⁾ 등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 시 기존 제도와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명확히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22)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2.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①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규격·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거쳐 지체 없이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제18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안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치안산업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3. 치안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4.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 제공 5.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치안장비 등의 인증 획득 지원 6.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활용 촉진) 경찰청장은 치안기술 개발 주체가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안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치안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3. 치안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유치 4.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 제공 5.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활용 촉진) 경찰청장은 치안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1.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활용하는 국내 치안기술 개발 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그 밖에 해외 우수 전문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산업 관련 외국의 우수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연구기관의 치안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지원 2.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지원 3. 해외연구기관의 국내 입지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해외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활용하는 국내 치안기술 개발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그 밖에 해외 우수 전문인력 유치·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산업 관련 외국의 우수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치안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지원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훈련 및 고용 지원 3.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국내 입지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정안은 경찰청장이 국내 치안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사업 및 외국의 우수 전문인력 및 연구기관을 유치·활용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국내 치안산업의 형성과 성장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외진출 지원책 및 외국 우수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생각됨.

신정훈의원안 제18조제1항제1호, 윤재옥의원안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안산업 전시회와 관련해서 경찰청은 2024년 경찰주간(2024. 10. 21.~ 10. 27.)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개최했고, 205²³⁾개 기업이 참여한 바 있음.

다만, 당해 조항들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 부담에 관하여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

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10월 29일 기사(국내·외 치안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다 ‘국제치안산업대전’)에 따르면, 참여기업에는 현대자동차, 한국항공우주산업, 에스엔티모티브, 엑손, 케이티 등 치안산업 대표기업과 엘마인즈, 지슨, 코콤, 엠아이케이스캔, 인섹시큐리티 등이 있음.

7) 치안사업자 신고, 치안산업 정보 관리 및 보고 등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제17조(치안사업자의 신고)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안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치안사업자의 신고) ①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안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치안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관련 시장 동향, 치안사업자 현황,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등 국내외 치안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14조(치안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관련 시장 동향, 치안사업자 현황,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등 국내외 치안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22조(치안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치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치안산업 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치안산업 관련 통계조사) ① 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치안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치안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치안 관련 단체의 장 및 치안사업자에게 치안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제25조(국가경찰위원회 보고) ① 경찰청장은 치안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고 등) ①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관련 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 관련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산업 및 치안장비등과 관련된 인력 현황, 경영현황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범위, 대상 및 주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정안은 경찰청장이 필요한 경우 치안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치안산업은 무기 제조 등이 포함되므로 사업자 현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입법례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도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소방업자에게 그 사업범위와 내용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⁴⁾.

제정안은 경찰청장이 치안산업 관련 시장동향, 치안사업자, 치안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보급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성과물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2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와 관련하여 두 제정안의 주요 차이점은 신정훈의원안은 경찰청장의 치안산업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과 「통계법」 준용을 규정한 반면, 윤재옥의원안은 통계조사 규정을 별도로 두어 자료요청 권한과 「통계법」 준용 등을 구체화하고 있음. 치안산업 통계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정보공유 측면에서 산업계의 투자 결정에도 도움이 되므로, 단순한 작성·관리를 넘어 제4장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통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신정훈의원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또한, 통계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의 자료요청 권한 규정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법률안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신정훈의원안 제25조는 치안산업 진흥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인권침해²⁵⁾, 개인정보 유출²⁶⁾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치안산업의 진흥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및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 같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 5. (생략)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 10. (생략)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신정훈의원안 제26조는 제정안 제18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관련 지원을 받은 자에게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치안산업이 우리나라의 치안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²⁷⁾에서도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은 자 등에 대해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2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 등) ① 소방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세제·금융지원 및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 협회 설립 등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제23조(협회) ① <u>경찰청장은</u> 치안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치안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한 치안기술 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3. 치안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4. 치안산업의 창업지원 등 치안사업자 육성 5. 치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6. 치안장비 보급의 확대 7. 치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치안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9. 이 법 또는 다른 치안 관계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6조(협회) ① <u>치안사업자는</u> 치안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안산업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치안장비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3. 치안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4. 치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치안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치안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 지원 7. 규제 개선 일괄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경찰청장은 협회가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u>필요한</u>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10.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협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협회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⑥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경찰청장은 협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정안은 치안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협회(법인) 설립과 협회의 업무내용, 경찰청장의 지도·감독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들은 협회 설립의 주체와 재정지원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음. 설립 주체와 관련해서는 신정훈의원안은 경찰청장을, 윤재옥의원안은 치안사업자를 협회 설립의 주체로 정하고 있음.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정훈의원안은 재정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윤재옥의원안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산업진흥 협회는 해당 업계의 사업자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협회의 설립주체를 치안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소속된 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협회의 업무 수행 비용은 회원들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의 비용 지원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유사입법례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8조제1항에서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의 설립 주체를 가상융합사업자로 정하고 있고, 관계 부처가 협회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²⁸⁾.

2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8조(협회)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이용 촉진·확산과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한 가상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

9) 권한의 위탁 등

신정훈의원안	윤재옥의원안
제27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치안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은 권한의 위탁 근거 규정을 통해 치안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단체 등에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 제27조에 따른 자율규제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4.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용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6. 규제 개선 일괄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제3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윤재옥의원안은 권한의 위임 근거 규정도 마련하고 있는데, 신정훈의원안에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7조제2종), 신기술 인증(안 제11조제1항) 등은 경찰청장의 권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지정권과 인증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권한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입법례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²⁹⁾는 권한의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정안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 등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때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규정은 업무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신정훈의원안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더해서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비밀 누설도 포함하고 있는데,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 제127조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임³⁰⁾.

-
-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표준화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 관리와 관련한 조사·분석
 2.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3. 제12조에 따른 자금융자 지원대상에 대한 분석
- 30)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문 의 처
02) 6788-5345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참고

치안산업 특수분류체계

코드	코드 명칭	코드	코드 명칭
1	치안 관련 제품 제조업	322	치안 관련 전기 및 통신 공사업
11	치안 관련 장비 제조업	3221	치안 관련 전기 공사업
111	무기류 제조업	3222	치안 관련 통신 공사업
1111	폭약 및 화약 제조업	323	치안 관련 유리 및 창호 공사업
111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3230	치안 관련 유리 및 창호 공사업
112	치안 관련 운송장비 제조업	4	치안 관련 서비스업
1121	치안 관련 자동차 제조업	41	치안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및 통합·관리업
1129	기타 치안 관련 운송장비 제조업	411	치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13	치안 관련 검색·관찰·전기통신장비 제조업	4110	치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131	치안 관련 검색장비 제조업	412	치안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132	치안 관련 관찰장비 제조업	4121	치안 관련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1133	치안 관련 전기통신장비 제조업	4129	기타 치안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14	치안 관련 감청·감식장비 제조업	42	치안 관련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1141	치안 관련 감청장비 제조업	421	치안 관련 출판업
1142	치안 관련 감식장비 제조업	4211	치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19	기타 치안 관련 장비 제조업	4212	치안 관련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1190	기타 치안 관련 장비 제조업	422	치안 관련 정보서비스업
12	치안 관련 의복 및 액세서리 제조업	4220	치안 관련 정보서비스업
121	치안 관련 의복 제조업	43	경비, 경호 및 탐정 관련 서비스업
1210	치안 관련 의복 제조업	431	경비, 경호 인력 공급 및 서비스업
122	치안 관련 액세서리 제조업	4311	경비, 경호 인력 공급업
1220	치안 관련 액세서리 제조업	4312	경비, 경호 서비스업
19	기타 치안 관련 제품 제조업	432	경비, 경호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190	기타 치안 관련 제품 제조업	4320	경비, 경호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1900	기타 치안 관련 제품 제조업	433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2	치안 관련 제품 도매 및 소매업	433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21	치안 관련 제품 도매업	44	치안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업
211	무기류 도매업	440	치안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업
2110	무기류 도매업	4400	치안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업
212	치안 관련 검색·관찰·전기통신장비도매업	49	기타 치안 관련 서비스업
2120	치안 관련 검색·관찰·전기통신장비도매업	490	기타 치안 관련 서비스업
213	치안 관련 감청·감식장비 도매업	4900	기타 치안 관련 서비스업
2130	치안 관련 감청·감식장비 도매업	5	치안 관련 기관 및 단체
219	기타 치안 관련 제품 도매업	51	치안 관련 공공행정
2191	치안 관련 방범도구 도매업	511	경찰
2192	치안 관련 유리 및 창호 도매업	5110	경찰
2199	그 외 기타 치안 관련 제품 도매업	519	기타 치안 관련 공공행정
22	치안 관련 제품 소매업	5190	기타 치안 관련 공공행정
221	무기류 소매업	52	치안 관련 교육 및 연구기관
2210	무기류 소매업	521	치안 관련 교육기관
222	치안 관련 검색·관찰·전기통신장비 소매업	5211	치안 관련 전문대학
2220	치안 관련 검색·관찰·전기통신장비 소매업	5212	치안 관련 대학교
223	치안 관련 감청·감식장비 소매업	5213	치안 관련 대학원
2230	치안 관련 감청·감식장비 소매업	5214	치안 훈련기관
229	기타 치안 관련 제품 소매업	522	치안 관련 연구기관
2291	치안 관련 유리 및 창호 소매업	5221	치안 경영 컨설팅업
2299	그 외 기타 치안 관련 제품 소매업	5222	치안 관련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3	치안 관련 건축·시설 설계 및 공사업	5223	치안 관련 공학 연구개발업
31	치안 관련 건축·시설 설계업	5224	치안 관련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310	치안 관련 건축·시설 설계업	59	기타 치안 관련 기관 및 단체
3100	치안 관련 건축·시설 설계업	590	기타 치안 관련 기관 및 단체
32	치안 관련 건축·시설 공사업	5901	치안 관련 전문가 단체
321	치안 관련 시설물 및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5902	치안 관련 시민운동 단체
3211	치안 관련 옥외 시설물 설치 공사업	5909	그 외 기타 치안 관련 기관 및 단체
3212	치안 관련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